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는 통지는”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로, “문서로 한다”를 “문서 등의 방법으로 알린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의 상해급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보험회사등의 명칭, 보상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교통사고 사고일자 및 보험회사등의 사고 접수 번호
4. 지급 의사 통지 번호
5. 별표 1에 따른 상해급수 및 지급한도
6.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 등의 방법으로 알린다.

1. 제1항제1호, 제2호(보험회사등의 명칭에 한정한다) 및 제4호의 사항
2. 지급 의사가 없어진 사유 또는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사유
3. 제1항에 따른 지급 의사의 효력이 없어지는 일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교통사고 환자:”를 “교통사고환자:”로 한다.

제16조의8부터 제16조의17까지를 각각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8까지로 하고,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3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이 영 제11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9(중전의 제16조의8) 제1항제1호 중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를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6조의11(중전의 제16조의10)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6조의13제2항”을 “영 제16조의1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의16제1항”을 “제16조의17제1항”으로 한다.

2의2. 제16조의8에 따른 교통사고환자의 이의 제기에 관한 업무
제16조의13(중전의 제16조의12) 중 “제16조의11”을 “제16조의7, 제16조

의9부터 제16조의12”로 한다.

제16조의14(중전의 제16조의13)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영 제16조의8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4제2항제1호의2 중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를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사·조정”을 “심사·조정 및 법 제12조의3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조정 등”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 문서 등의 방법으로 알린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의 상해급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신 설>	2. 보험회사등의 명칭, 보상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신 설>	3. 교통사고 사고일자 및 보험회사등의 사고 접수 번호
<신 설>	4. 지급 의사 통지 번호
<신 설>	5. 별표 1에 따른 상해급수 및 지급한도
<신 설>	6.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

<신 설>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생략)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 (생략)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

를 철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류, 팩스, 전자파일, 그 밖의 문서 등의 방법으로 알린다.

1. 제1항제1호, 제2호(보험회사 등의 명칭에 한정한다) 및 제4호의 사항

2. 지급 의사가 없어진 사유 또는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사유

3. 제1항에 따른 지급 의사의 효력이 없어지는 일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교통사고환자: -----

을 제외한 의료기관
<신 설>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또는 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 또는 조정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의9 (생략)

제16조의8(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의 심의 사항) 법 제23조의
3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이란 이 영 제11조제1항제6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9(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1. -----

---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 (현행 제16조의9와 같
음)

제16조의10(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23조의4제4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 2. (생략)

<신설>

3.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 접수 및 이 영 제16조의13 제2항 · 제4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 업무

4.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의 통지에 관한 업무

5. (생략)

② (생략)

제16조의11 (생략)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

제16조의11(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의8에 따른 교통사고환자의 이의 제기에 관한 업무

3. -----

----- 영 제16조의14 제2항-----

4. 제16조의17제1항-----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2 (현행 제16조의11과 같음)

제16조의13(운영세칙) -----

--- 제16조의7,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2-----

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는 공제분쟁조
정분과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16조의14 ~ 제16조의17 (생략)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의 4제4항,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절차 등)

① -----

다만, 이 영 제1
6조의8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5 ~ 제16조의18 (현행
제16조의14부터 제16조의17까
지와 같음)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u>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u>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2. ~ 4. (생략) ③ ~ ⑤ (생략)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u>심사·조정</u>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생략)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u> 및 <u>제4호</u>-----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심사·조정 및 법 제12조의3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조정 등</u>----- ----- ----- ----- -----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4761